## 미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

## 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에 의거 미장공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, 전도, 감전 및 근골격계질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미장공사 작업별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시멘트 모르터 재료를 사용하여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건설현장 미장공사 작업에 적용한다.

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미장공사"라 함은 건설현장에서 흙손 등을 사용하여 모르터(mortar), 플라스터(plaster), 회반죽, 흙 등의 부정형 재료를 바르거나 뿜칠하는 공사를 말한다.
  - (나) "초벌, 재벌, 정벌바름"이라 함은 벽미장 작업 시 여러층으로 나뉘어 바름 이 이루어지는데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, 재벌바름, 정벌바름이라 한다.
  - (라) "진동기(Vibrator)"라 함은 콘크리트 타설 시 진동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평탄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계 기구를 말한다.
  - (마) "휘니샤(Finisher)"라 함은 콘크리트 타설 후 바닥면처리를 하기 위하여